

제 3 2 1 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보고안건 [설명자료]

2023. 11. 21.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1

정관 일부개정(안)

'23. 11. 21.(화) 기획조정실장 박경원: ☎6925-3697 기획팀장 이금희: ☎2038-8673 담당 이용경: ☎2038-8671

□ 개정이유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을 시행령('22.3.25.시행)에 따라 내용을 반영하여 정관을 보완·정비하고자 함.
- 위의 이유로 2023. 9. 20.에 정관 개정을 진행한 바 있음. 추가적으로 재단의 목적·사업의 범위 및 일부 자구를 포함한 정관의 내용, 사회서비스원의 각종 업무절차와 기준에 관한 내용 등을 개정하고자 함.
- 보건복지부 시·도 사회서비스원 표준운영지침(2023년) 내용을 반영하여 사회서비스원의 정책에 맞게 정관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골자

①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개정

- 사회서비스원 특수 법인화에 따른 명칭 통일
: 법인, 재단 → 사회서비스원(*정관 전체 조항에 해당)
-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구성 변경, 임원 연임 심의 내용 추가:
정관 제8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9조(임원의 임기)
- 사업계획 및 예산서 제출시기 변경: 제28조(사업계획과 예산)
- 결산서 제출 절차 및 시기 변경 및 근거조항 명시: 제29조(결산)
- 직원의 채용 관련 세부 원칙 근거조항 명시: 제32조(직원의 채용)

② 보건복지부 시·도 사회서비스원 표준운영지침 내용 반영

- 사회서비스원 조직 구성 및 운영 지침에 따른 명칭 통일
: 대표이사, 이사장 → 원장
- 사회서비스원의 정책적 배경, 업무추진 환경에 맞게 조문 수정
: 구체적 개정 사유는 신구조문대비표 참고
- 제1조(목적), 제3조(소재지), 제4조(사업의 범위), 제5조(수익사업), 제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제7조(임원의 선임), 제11조(임원의 해임), 제12조(임원의 직무), 제13조(원장의 직무대행), 제14조(임원의 보수), 제16조(이사회 의결사항), 제17조(이사회 소집), 제19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제20조(회의록), 제24조(재산의 관리), 제32조(직원의 채용 등), 제33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제36조(해산)

③ 제31조(조직 및 정원) 별표3 기구표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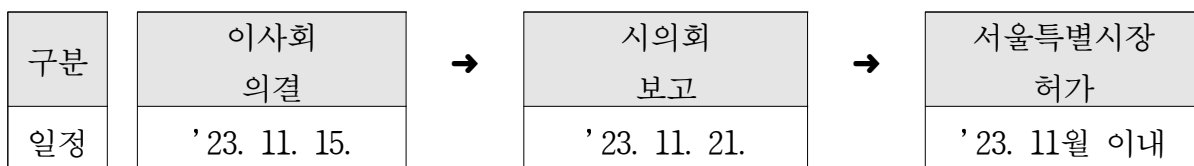
- 사업별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노인, 장애인, 보육) 중심으로 자문기구 운영 중인 현황 반영: ‘운영위원회’ 를 ‘자문위원회’ 로 변경

□ 참고사항

○ 제안근거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22. 3. 25. 시행)
- 시·도 사회서비스원 표준운영지침(보건복지부, 2023)

○ 추진절차 및 일정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22. 3. 25.시행)
제13조(정관)②시·도 서비스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정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1조(목적) 이 법인은 <u>서울특별시 사회 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그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시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에 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이 법인은 <u>서울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원법 제7조에 따라 사회서비스원이 특수법인화됨에 따라 법인, 재단 명칭을 사회 서비스원으로 통일(이후 모든 조항에 적용) · 표준운영지침 참고정관안 제4조(목적)
제2조(설립근거 및 명칭) ① (생 략) ② 이 법인은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이하 “ <u>재단</u> ”이라 한다)이라 하며, 영문 표기는 SEOUL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약칭 “SEOUL P.A.S.S.”)로 한다.	제2조(설립근거 및 명칭)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사회서비스원</u> ” ----- ----- ----- -----.	
제3조(소재지) <u>재단</u> 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 특별시(이하 “ <u>시</u> ”라 한다) 마포구	제3조(소재지) <u>사회서비스원</u>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운영지침 참고정관안 제2조(사무소의 소재지)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마포대로 89(도화동)에 두고 필요에 따라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u>지사 또는 출장소</u>를 둘 수 있다.</p>	<p>----- ----- - <u>분사무소</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소속기관은 분사무소에 해당
<p>제4조(사업의 범위)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p>1. <u>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수탁운영</u></p> <p>2. <u>사회서비스 관련 법령에 따른 각종 서비스 등의 제공</u></p> <p>3. <u>다음 각 목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재무·회계·법무·노무 등에 관한 상담·자문</u></p>	<p>제4조(사업의 범위) 사회서비스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p>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의 발생으로 아동·노인·장애인 등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긴급돌봄서비스의 제공</p> <p>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받은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p> <p>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받은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지원에 관한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서비스원법 제10조(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사업) 내용 반영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설립·설치 및 운영</p> <p>나. 사회복지서비스유관법률에 따른 각종 급여 및 서비스 제공</p> <p>4. 사회복지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시설 및 제공 서비스와 관련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제고 관련 연구·개발</p> <p>5. 사회복지서비스원의 운영 시설 및 제공 서비스와 지역 내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계획 수립지원</p> <p>6. 사회복지서비스원에 종사하는 사람의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p>	<p>4. 사회복지서비스 수급자의 욕구에 따른 종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p> <p>5.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및 운영 기관에 대한 재무·회계·법무·노무 등에 관한 각종 상담·자문</p> <p>6.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의 지원</p> <p>7. 지역 내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의 지원</p> <p>8. 지역 내 사회복지서비스 수급계획 수립의 지원</p> <p>9. 새로운 사회복지서비스 도입을 위한 시범 사업의 실시</p> <p>10.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서비스 공공성등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제5조(수익사업) ① <u>재단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u></p> <p>② <u>재단은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면 각 사업마다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u></p> <p>③ <u>수익사업의 수익금은 재단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그 밖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u></p>	<p>제5조(수익사업) ① <u>사회서비스원은 제4조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u> -----.</p> <p>② <u>사회서비스원-----</u> ----- -----.</p> <p>③ ----- <u>사회서비스원의 목적 사업에 사용-----</u>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운영지침 참고정관안 제5조(사업) 어의 상 ‘목적사업에 사용’ 이 적절
<p>제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u>재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u></p> <p>1. <u>이사장 1명</u></p> <p>2. <u>대표이사 1명</u></p> <p>3. <u>이사 10명(이사장 및 대표이사, 노동이사 1명을 포함한다)</u></p>	<p>제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u>사회서비스원-----</u>.</p> <p>1. <u>원장(이사장 겸임) ---</u></p> <p>2. <u>원장, 노동이사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u></p> <p><삭 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운영지침 3.시도 사회서비스원 조직 구성 및 운영 4)이사회에서 시·도 사회서비스원 원장이 이사장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어 직위를 원장으로 통일 기존 정관에서 이사장대표이사가 구분되어 있는데, 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는 원장을 의미함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4. (생략)</p> <p>② <u>대표이사</u>는 상근으로 하며 다른 상근의 직을 겸할 수 없다.</p> <p>③ <u>대표이사</u>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p>	<p>3. (현행 제4호와 같음)</p> <p>② <u>원장</u>은 ----- -----.</p> <p>③ <u>원장</u>을 ----- -.</p>	
<p>제7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u>선임직 이사는 공모 후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u>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p> <p>② (생략)</p> <p>③ <u>대표이사</u>는 재단의 사업과 연관되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공모 후 <u>임원추천위원회</u>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u>이사회</u>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p>	<p>제7조(임원의 선임) ① ----- ----- 구분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원장</u>을 포함한 <u>선임직 이사는</u> ----- -- 법 제14조에 따른 <u>임원추천위원회</u> (이하 “<u>추천위원회</u>”라 한다)----- ----- <u>시장이</u> 임명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운영지침 참고정관안 제9조(임원의 선임) 사회서비스원법 제16조(임원의 임명) 임원 임명 시 이사회 의결 절차 삭제
<p>④ <u>노동이사</u>는 입·후보 등록신청을 한</p>	<p>④ <u>선임직 이사</u> 중 <u>노동이사</u>는 -----</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직원을 대상으로 직원들의 투표에 의해 최종 노동이사 후보자를 선출하고, 투표 결과를 반영하여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u>이사회</u>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p> <p>⑤ 감사 2명중 1명은 <u>시</u> 사회서비스원 담당 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1명은 공모 후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u>이사회</u>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p> <p>⑥ 이사, 대표이사 및 감사는 각각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선임한 후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연임의 경우에는 <u>이사회</u>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p>	<p>----- ----- -----</p> <p>- <u>시장</u>이 임명한다.</p> <p>⑤ ----- <u>시의</u> ----- ----- -----</p> <p>----- <u>시장</u>이 임명한다.</p> <p><삭 제></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제8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재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p> <p>1.(생략) 2. 서울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3명 3. 재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명</p> <p>② (생략)</p>	<p>제8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사회서비스원의 임원 후보자 추천과 임원의 연임에 관한 사항 심의를 위하여 사회서비스원----- -----.</p> <p>1. (현행과 같음) 2. 서울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2명 3. 사회서비스 관련 학계 및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3명 (추천 인원이 3명을 초과하는 경우 이사회가 심의·의결하여 정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원법 제14조(임원추천위원회) 3항에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사회서비스 관련 학계 및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3명 이상 포함되어있다고 규정 · 위의 내용에 의해 서울시의회가 추천하는 자는 2명으로 조정됨.
<p><신설></p>	<p>③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둔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임원으로 추천된 자가 임원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운영지침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운영의 (존속기간) 내용 반영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③ 추천위원회가 임원 후보를 추천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배수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p>	<p><u>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함을 원칙으로 하되, 임원의 결원이 동시 발생 또는 최초 결원 발생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위원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u></p> <p>1.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u>만료되기 전 2개월</u></p> <p>2. 임기 만료 외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u>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u></p> <p>④ ----- ---- 공개모집하여야 하며, 특별한 -----.</p>	
<p>④ 임명권자는 추천된 임원 후보가 제 1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재단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p>	<p>⑤ 시장은 ----- ----- 사회서비스원 의 운영-----</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는 때에는 <u>추천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u>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지체 없이 임원 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p> <p>⑤ (생략)</p> <p>1. ~ 7. (생략)</p> <p>8. <u>재단의 고유목적사업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u></p> <p>⑥ 기타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u>재단의 규정</u>으로 정한다.</p>	<p><u>임원후보자</u>----- ----- -----.</p> <p>⑥ (현행과 같음)</p> <p>1. ~ 7. (현행과 같음)</p> <p>8. <u>사회서비스원</u>----- -----</p> <p>⑦ ----- ----- <u>정관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사회서비스원</u>-----.</p>	
<p>제9조(임원의 임기) ① <u>선임직 이사(대표 이사를 포함한다)의 임기는 3년, 선임직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u></p> <p><후단 신설></p>	<p>제9조(임원의 임기) ① <u>원장의 임기는 3년,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u>----- ----- -----.</p> <p><u>이 경우, 임원의 연임은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원법 제17조(임원의 임기) • 후임자 임명 시까지 임기 만료 임원의 직무 가능 조항 추가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② 시장은 <u>대표이사</u>의 경영성과에 따라 <u>대표이사</u>를 임기 중에 해임하거나 임기가 끝나더라도 연임시킬 수 있다. 다만, 성과계약의 이행실적과 경영실적의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p> <p>③ 노동이사는 임기종료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조례와 <u>재단</u>의 규정에서 정하는 <u>노동자투표</u> 등 <u>임원추천위원회</u> 추천 절차를 거쳐 새로 선출하여 임명하여야 한다.</p>	<p>② ----- <u>원장</u>의 ----- <u>원장</u>을 ----- -----. ----- -----.</p> <p>③ ----- -----<u>사회서비스원</u>----- <u>직원투표</u> 등 <u>추천위원회</u> ----- ----- --.</p>	
<p>④ <u>당연직 이사</u>와 <u>당연직 감사</u>의 임기는 <u>그 직을 상실한 때</u>에 만료되며 <u>후임자가 승계</u>한다.</p> <p>⑤ <u>이사나 감사</u> 중에 결원이 생기면 2개월 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1개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p>	<p>④ <u>당연직 임원</u>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u>재직하는 기간</u>으로 한다.</p> <p>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⑥ (생략)	<p>1. <u>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u></p> <p>2. <u>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u></p> <p>⑥ (현행과 같음)</p>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u>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u>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 <u>각 호의 어느 하나</u> ---- <u>사회서비스원</u> ----- ---	
1. <u>“법” 제19조 제1항에 해당되는 사람</u>	1. 「 <u>사회복지사업법</u> 」 제19조제1항 <u>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서비스법 제19조 1항(정관 제10조 1항 1호)에서는 법 제18조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정관 제10조 1항 2호와 중복 · 제10조 1항 1호, 2호에 중복되는 내용이 없되 같은 내용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수정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2. (생략)</p> <p>② <u>재단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u></p> <p>③ <u>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u></p>	<p>2. (현행과 같음)</p> <p>② <u>사회서비스원-----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였던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 -</u> -.</p> <p>③ <u>제2항에 따라 퇴직한 -----</u> ----- -----.</p>	
<p>제11조(임원의 해임) <u>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u></p> <p>1. <u>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u></p> <p>2. <u>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u></p> <p>3. <u>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u></p> <p>4. <u>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단의 명</u></p>	<p>제11조(임원의 해임) <u>시장은 임원이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u></p> <p><u>1~5. 삭제</u></p>	<p>· 표준운영지침 제10조(임원의 해임)</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u>예를 훼손하거나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u></p> <p>5. <u>기타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u></p>		
<p>제12조(임원 선임 제한) ① 이사의 선임에 있어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이사 정수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p>	<p><삭 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거 이 재단이 공익법인법에 따라 설립되었을 경우에는 동 규정이 필요했으나 현재는 존치할 필요가 없는 규정임
<p>② 감사는 이사와의 관계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지 않아야 한다.</p>		
<p><u>제13조(임원의 직무 등)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u></p>	<p><u>제12조(임원의 직무 등) ① 원장은 사회서비스원의 대표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이사회 소집 및 진행</u> <u>사회서비스원의 업무집행과 재정 총괄</u>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운영지침 참고정관안 제13조(임원의 직무) 내용 반영 사회서비스원법 시행령 제15조(이사회) 내용 반영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집행과 재정을 총괄하며 경영 전반에 책임을 지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p>	<p><u>등 경영 전반에 대한 책임</u> 3. <u>소속 직원 지휘·감독</u></p> <p><삭 제></p>	
<p>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p> <p>④ 이사장 또는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제7조 제2항 각 호의 당연직 이사, 이사회에 참석한 연장자 순으로 권한을 대행한다.</p>	<p>② ----- <u>사회서비스원</u>----- <u>이사회</u>----- -----.</p> <p><삭 제></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⑤ <u>재단의 이익과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재단을 대표하지 못한다.</u></p> <p>⑥ <u>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u></p>	<p>③ <u>사회서비스원의 이익과 원장 또는 원장-----원장 또는 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사회서비스원을 -----.</u></p> <p>④ ----- <u>업무를 한다.</u></p>	
<p>1. <u>재단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u></p> <p>2. <u>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u></p> <p>3. (생략)</p> <p>4. <u>재단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u></p> <p>5. <u>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u></p>	<p>1. <u>사회서비스원의 -----</u></p> <p>2. <u>이사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u></p> <p>3. (현행과 같음)</p> <p>4. <u>사회서비스원-----이사회에 -----</u></p> <p>5. <u>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 때</u></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u>에 이를 이사회와</u> 시장에게 보고하는 일</p> <p>6. 제5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 <u>이사회</u>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p>	<p><u>에는 이사회에</u> 그 시정을 요구하고 -----</p> <p>6. 제5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 <u>이사회</u>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p>	
<p>7. 이사가 <u>재단</u>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조례와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u>재단</u>에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는 일</p> <p><신설></p>	<p>7. ----- <u>사회서비스원</u>의 ----- ----- ----- <u>사회서비스원</u>에 ----- ----- -----</p> <p>8. 그 밖에 <u>이사회</u>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u>이사회</u>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신설></p>	<p>제13조(원장의 직무대행) ① 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2조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연직 이사 2. 이사 중 연장자(연령이 같을 경우 먼저 이사로 선임된 자) 	
<p>제14조(임원의 보수) ① 상근임원의 보수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p> <p>②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출석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이 지정하는 당연직 이사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p>	<p>제14조(임원의 보수) ① 원장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p> <p>② 비상임 ----- ----- 범위에서 비상임 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 -----.</p> <p><후단 삭제></p>	<p>· 표준운영지침 참고정관안 제17조(임직원의 보수)</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제15조(설치 및 구성)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p> <p>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p> <p>③ (생략)</p>	<p>제15조(이사회 구성) ① <u>사회서비스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u> · ----- ----- <u>사회서비스원에</u> -----.</p> <p>② ----- <u>원장을</u> ----- -----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6조(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u>이사회</u>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p> <p>1. <u>재단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u></p> <p>2. <u>조직 및 기구</u>에 관한 사항</p> <p>3. <u>재단의 사업계획</u>에 관한 사항</p> <p>4. (생략)</p>	<p>제16조(이사회 의결사항) <u>이사회</u>는 다음 ----- <u>사항을 심의·의결한다</u>.</p> <p>1. <u>사회서비스원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u></p> <p>2. <u>조직·기구 및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u>-----</p> <p>3. <u>사회서비스원</u>-----</p> <p>4. (현행과 같음)</p>	<p>· 표준운영지침 참고정관안 제20조(이사회 의결사항)</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5.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p> <p>6.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p> <p>7.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p> <p>8. 재단의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p> <p>9. · 10. (생략)</p> <p>11. 그 밖에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p>	<p>5. <u>사회서비스원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u>-----</p> <p><삭제></p> <p>6. <u>사회서비스원의 제반 규정의 제정·개정</u> -----</p> <p>7. <u>수익사업</u>-----</p> <p>8. · 9. (현행 9호, 10호와 같음)</p> <p>10. ----- <u>원장</u>-----</p>	
<p>제17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③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p>	<p>제17조(이사회 소집) ① <u>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원장은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 안전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u></p>	<p>· 표준운영지침 참고정관안 제19조(이사회 소집) 반영</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p> <p>2. 감사가 재단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p>	<p><삭 제></p> <p><삭 제></p>	
<p>④ <u>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이사에게 알려야 한다.</u>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를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u>이사회를 소집하는 원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 --- ----- -----.</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⑤ <u>이사장이</u> 궐위(闕位)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u>찬동</u>으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 제2항 각 호의 당연직 이사 순으로 이사회를 주재한다.</p>	<p>⑤ <u>원장</u>----- ----- ----- <u>찬성</u>----- -----. ----- -----.</p>	
<p>제18조(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18조(이사회 의결) ① ----- ----- -----. ----- -----.</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1. 재단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p> <p>2. 재단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p> <p>3.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p> <p>② 이사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p> <p>③ (생략)</p>	<p>1. <u>사회서비스원</u> -----</p> <p>2. <u>사회서비스원</u> -----</p> <p>3. <u>사회서비스원</u>-----</p> <p>② <u>원장</u>-----</p> <p>-----.</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9조(이사회 참여제한) <u>이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u></p> <p>1. (생략)</p> <p>2. <u>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과 관련하여 자신과 재단이 이해관계가 되는 사항</u></p> <p>3. (생략)</p>	<p>제19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u>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u></p> <p>1. (현행과 같음)</p> <p>2. ----- <u>등에</u>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과 사회서비스원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p> <p>3. (현행과 같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운영지침 참고정관안 제21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의미가 명확하도록 표현 수정
<p>제20조(회의록) ① <u>이사회는 재단 직원 중 간사를 두어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u></p>	<p>제20조(회의록) ① <u>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운영지침 참고정관안 제23조(이사회 회의록)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의결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③ <u>이사장은 회의록을 재단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원장은 회의록을 사회서비스원-----</u> -----.</p>	
<p>제21조(설치)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위원회 또는 기구를 둘 수 있다.</p>	<p>제21조(위원회 설치) <u>사회서비스원-----</u> ----- -----.</p>	
<p>제22조(운영) 위원회 또는 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u>재단의 규정</u>으로 정한다.</p>	<p>제22조(위원회 운영) ----- ----- <u>사회서비스원-----</u>.</p>	
<p>제23조(재산) ① <u>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u></p>	<p>제23조(재산) ① <u>사회서비스원-----</u> -----.</p>	<p>· 승인 주체 시장으로 명확히 기재</p>
<p>② <u>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한다.</u></p>	<p>② <u>사회서비스원-----</u> -----.</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1. (생략)</p> <p>2. <u>설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 및 개인의 출연금, 기부금. 다만, 기부금의 경우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u></p> <p>3~4. (생략)</p> <p>③ <u>재단의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및 현행 기본재산 목록은 각각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u></p> <p>④ (생략)</p>	<p>1. (현행과 같음)</p> <p>2. <u>설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 및 개인의 출연금, 기부금(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u></p> <p>3~4. (현행과 같음)</p> <p>③ <u>사회서비스원의</u> ----- ----- -----.</p> <p>④ (현행과 같음)</p>	
<p>제24조(재산의 관리) ① <u>재단의 대표이사</u>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u>재단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u></p>	<p>제24조(재산의 관리) ① <u>원장은</u> ----- ----- <u>사회서비스원의 재산</u>-----.</p>	<p>· 표준운영지침 참고정관안 제25조(재산의 관리) 2항</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② <u>재단의 기본재산</u>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u>승인</u>을 받아야 한다.</p> <p>1. <u>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 변경</u>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p> <p>2.·3. (생략)</p> <p>③ <u>재단의 기본재산</u>은 그 목록과 평가액을 적어야 하며,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서울시장의 허가를 받아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p>	<p>② <u>기본재산</u>----- ----- ----- ----- <u>허가</u>를 -----.</p> <p>1. 기본재산을 <u>매도·증여·교환·임대 또는 용도를 변경</u>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u>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u>를 하고자 하는 경우</p> <p>2.·3. (현행과 같음)</p> <p>③ <u>사회서비스원</u>----- ----- ----- -----.</p>	
<p>제25조(기금) ① <u>재단의 운영 및 사업</u>에 소요되는 자금을 <u>충당</u>하기 위하여 시장</p>	<p>제25조(기금) ① <u>사회서비스원의</u> ----- -----</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의 승인을 받아 <u>재단에</u>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p>	<p>- <u>사회서비스원에</u> -----.</p>	
<p>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p>1. 2. 3. 4. 5. (생략)</p> <p>6. 기타 기본재산의 운용 및 <u>재단 수익 사업</u>으로 발생하는 수입금</p> <p>③ <u>재단은</u> 기금의 운영·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u>재단의</u> 규정으로 정한다.</p>	<p>② ----- -----.</p> <p>1. 2. 3. 4. 5. (현행과 같음)</p> <p>6. ----- <u>사회서비스원 수익사업</u>-----</p> <p>③ <u>사회서비스원은</u> ----- ----- ----- <u>사회서비스원</u> 의 -----.</p>	
<p>제26조(운영재원) <u>재단사업</u>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보통재산으로 출연한 출연금, 보조금, 위탁사업비, 재산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사업의 수익금,</p>	<p>제26조(운영재원) <u>사회서비스원 사업</u> -- ----- ----- -----</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기부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	
제27조(회계연도) <u>재단</u> 의 회계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7조(회계연도) <u>사회서비스원</u> ----- -----.	
<p>제28조(사업계획과 예산) ① <u>재단</u>은 다음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서를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연도 시작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p> <p>② <u>재단</u>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서를</p>	<p>제28조(사업계획과 예산) ① <u>사회서비스원</u>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시작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하는 때에도 또한 ----.</p> <p>② <u>사회서비스원</u>----- -----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 법률(사회서비스원법 제27조) 명시 및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 및 예산서 제출 시기, 제출객체 변경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사회서비스원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p> <p>③ ----- -----승인받은 날 부터 ----- -----.</p>	
<p>제29조(결산) ① 사회서비스원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2. (생략)</p> <p>② <u>재단</u>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1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 소관 상</p>	<p>제29조(결산) ① ----- 다음 ----- -----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 법 제27 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 및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 인을 받아야 ---.</p> <p>1. 2. (현행과 같음)</p> <p>② <u>사회서비스원</u>----- ----- -----</p>	<p>· 근거 법률(사회서비스원법 제27조) 명시</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p>	<p>-----.</p> <p>③ <u>사회서비스원</u>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결산서를 승인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30조(손익금의 처리) ① 재단의 세입·세출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월 또는 유보한다.</p> <p>② 재단의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후,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준비금 등으로 적립한다.</p> <p>③ 재단의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p>	<p>제30조(손익금의 처리) ① <u>사회서비스원</u></p> <p>-----</p> <p>-----</p> <p>---.</p> <p>② <u>사회서비스원</u>-----</p> <p>-----</p> <p>---<u>의결</u>-----</p> <p>-----</p> <p>---</p> <p>③ <u>사회서비스원</u>-----</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무회계 결산에 따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준비금으로 이를 보전하고, 부족할 때에는 이월한다.</p>	<p>----- --의결----- -----.</p>	
<p>제31조(조직 및 정원) ① 재단의 조직은 별표3, 정원은 별표4와 같으며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 및 정원규정으로 정한다.</p> <p>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p>	<p>제31조(조직 및 정원) ① <u>사회서비스원</u>----- ----- -----.</p> <p>② ----- <u>사회서비스원의</u> ----- ----- <u>사회서비스원에</u> ----- --.</p>	
<p>제32조(직원의 채용 등) ① <u>재단의 직원은 대표이사가 임면한다.</u></p>	<p>제32조(직원의 채용 등) ① <u>사회서비스원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직원을 원장이 직접 임면하여야 하며, 법 제2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원법 제22조(직원의 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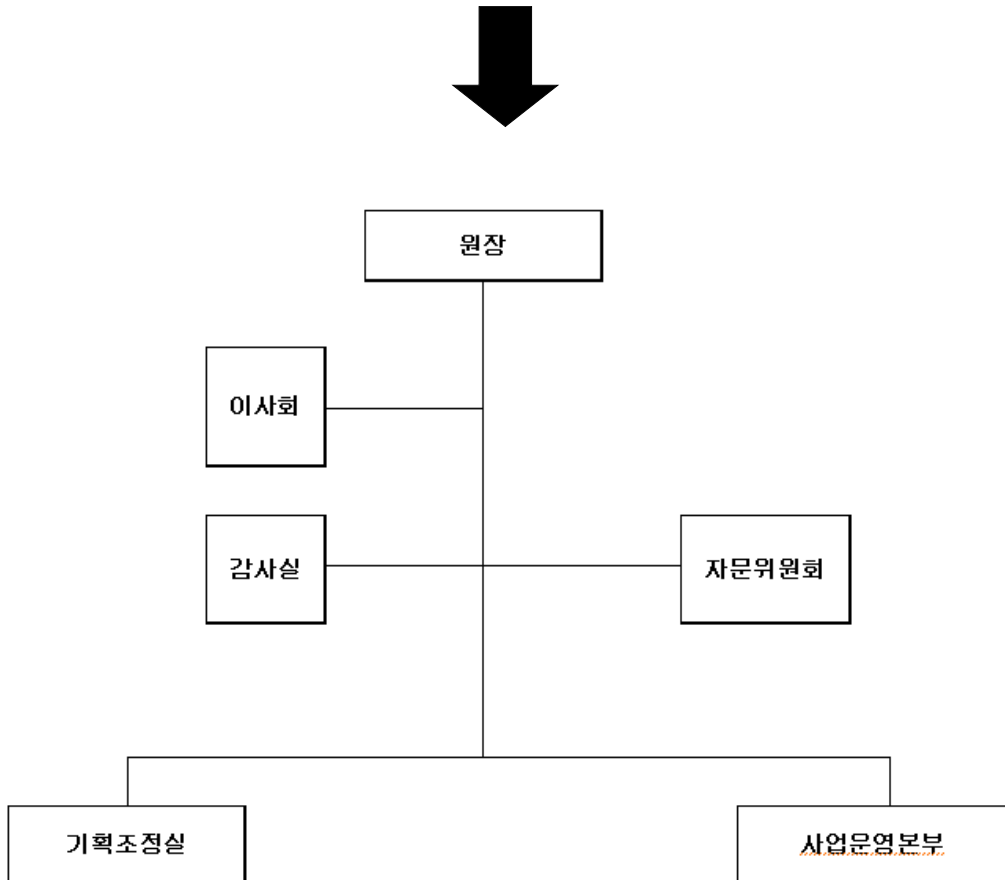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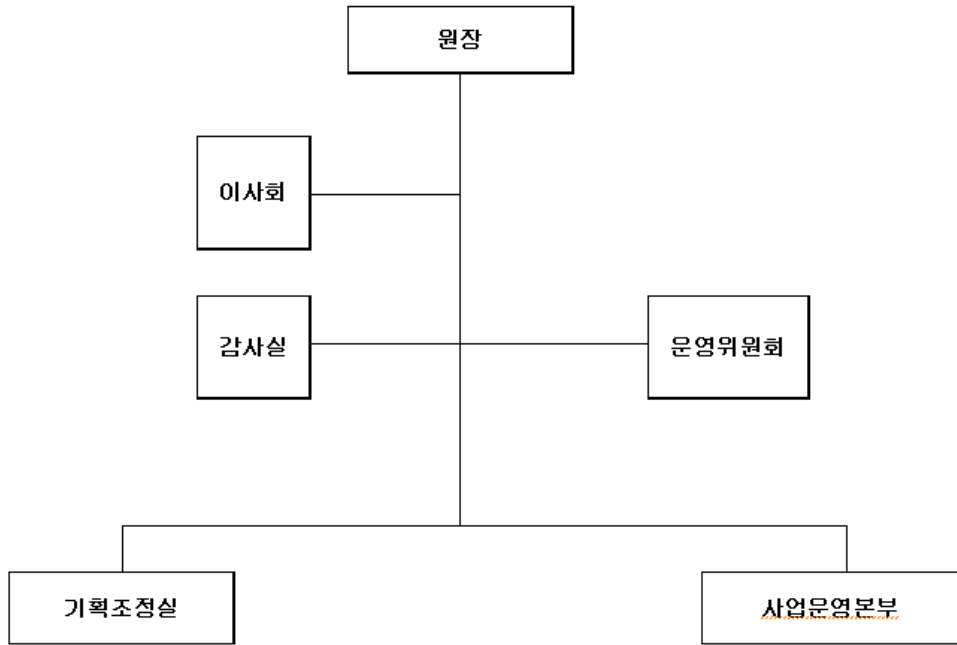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② <u>직원의 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u>	<삭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항에서 사회서비스원법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동일한 내용 삭제
③ <u>직원의 임면, 승진, 복무, 보수 등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규정으로 정한다.</u>	<삭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항에서 사회서비스원법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동일한 내용 삭제
<p><신 설></p> <p><신 설></p>	<p>② <u>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원 채용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사회서비스원 표준운영지침을 따르되, 그 밖에 직원의 임면·승진·복무·보수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u></p> <p><u>제33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사회서비스원의 원장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u></p> <p>② <u>원장이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관 개정안 제6조 2항에 따른 상근임원(대표이사)의 명확화 표준운영지침 참고정관안 제16조(임직원의 겸직제한)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제33조(겸직제한) 재단의 <u>상근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근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대표이사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u></p>	<p><삭제></p>	
<p>제34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u>재단의 임·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이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u></p>	<p>제34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u>사회서비스원</u>----- ----- -----.</p>	
<p>제36조(<u>재단해산</u>) ① (생략)</p> <p>② <u>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해산 등기를 마친다.</u></p> <p>③ <u>재단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거쳐 시에 귀속</u></p>	<p>제36조(<u>해산</u>)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사회서비스원을</u>----- <u>이사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u></p> <p>③ <u>사회서비스원의 해산 후 잔여재산은 시에 귀속된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원 표준운영지침에 맞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허가 순서 변경 • 제18조(이사의 의결)에서 사회서비스원의 해산은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내용 삭제 • 사회서비스원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당연히 시에 귀속되며 이 시점은 청산절차가 완료된 시점이므로 사회서비스원 표준운영지침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p><u>하여야 한다.</u></p>		<p>참고정관안과 동일하게 수정함</p>
<p>제37조(공고방법) <u>재단의 설립·해산</u> 등 중요한 사항의 공고는 시 또는 당해 <u>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시보(市報)</u>에 이를 게재한다.</p>	<p>제37조(공고방법) <u>사회서비스원의 설립·해산</u> ----- <u>사회서비스원의 인터넷</u> ----- -----.</p>	
<p>제38조(규정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u>재단의 운영</u>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p>	<p>제38조(규정제정) ----- <u>사회서비스원</u>----- -----.</p>	
<p><신 설></p>	<p>부 칙(2023. 11. 00.) 이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의 허가한 날부터 시행하며 법 제7조 및 보건복지부 표준운영 지침에 근거한 명칭(사회서비스원, 원장)은 사회서비스원 모든 규정 및 내규에 적용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원 규정 및 내규 전체에 적용 가능하도록 부칙 추가

<별표 3>

기구표



□ 추진근거

- '23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제1회 추가경정 예산
 - 제31차 이사회 의결사항 ('23. 2. 23.)
- '23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제2회 추가경정 예산
 - 제34차 이사회 의결사항 ('23. 9. 15.)
- '23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

〈 전년도 회계 결산이후 〉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순세계잉여금 중 2023년 예산편성 시 반영되지 않은 차액은 2023년 예산에 추가 편성

- 세입예산과목은 순세계잉여금, 세출예산과목은 내부유보금(예비비)으로 편성
- 내부유보금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예외적으로 사용 시 시(市) 관련 부서(공기업담당관 및 주관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함

-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회계규정 제67조

제67조(예비비)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비용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한다.

② 예비비를 사용코자 할 때에는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우선 집행 후 사후의결로 할 수 있다.

□ 예비비 사용 승인 및 사용 경과

- '23. 10. 24. 제36차 이사회 승인
 - 제196호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예비비 사용승인(안)
- '23. 10. 24. 서울시 승인

□ 예비비 사용 사유

○ 인건비와 운영비 재원 마련

- '23년 본예산(안) 승인 이후 출연금 100억원 삭감으로 인하여 '23년 제2차 추경에서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 편성

(단위 : 천원)

구 분	본예산 (A)	증감액 (B-A)	제1회 추경 예산(B)	증감액 (C-B)	제2회 추경 예산(C)
세입 계	32,053,534	△5,849,907	26,203,627	217,808	26,421,435
자체사업수입 등	10,272,436	△80,759	10,191,677	217,809	10,409,486
출연금 (사회서비스원 보조금 포함)	16,884,844	△10,000,000	6,884,844	0	6,884,844
잉여금	4,896,254	4,230,851	9,127,105	0	9,127,105
세출 계	32,053,534	△5,849,907	26,203,627	217,808	26,421,435
본부 운영비 및 성과급	7,207,422	△3,112,123	4,095,299	△139,930	3,955,369
정책사업비	24,527,577	△6,650,100	17,877,477	357,738	18,235,215
예비비	320,535	3,910,316	4,230,851	0	4,230,851

□ 예비비 사용액 산출 근거

○ 사용액 : 2,998,030천원

- '23년 말까지 예상 세입 세출 전망 반영하여 부족액만큼을 본예산으로 편성

○ '23년 월별 현금 보유액 전망(제36차 이사회 당시)

(단위: 백만원)

구분	실적										전망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세입	잉여금	4,896											4,896	
	출연금	-	-	1,237	1,237	-	-	1,237	-	1,237			4,949	
	보조금	-	-	-	206	263	298	242	207	133	310	375	31	2,065
	자체수입 등	731	878	845	856	815	822	800	792	786	1,364	577	568	9,834
	계	5,623	878	2,082	2,299	1,078	1,120	2,279	999	2,156	1,674	952	599	21,744
세출	2,288	1,991	1,987	1,905	2,036	1,940	1,774	1,727	1,802	2,357	2,856	2,079	24,742	
보유액	3,340	2,227	2,322	2,716	1,757	938	1,443	715	1,069	386	△1,518	△2,998		

※ 10월 25일 급여 지급 필요하며(1,469백만원), 5개 종합재가센터 임차보증금 반환금수입은 10월 말일 입금 예상되어 10월부터 예비비 집행 필요

□ 예비비 사용 계획

(단위 : 천원)

구분	3차 추경 조정	예비비 사용	세입증가	타사업비에서 전용
합 계	550,418		550,418	
기관운영비	350,000	230,155	132,845	(13,000)
인건비	363,000	230,155	132,845	
운영비	(13,000)			(13,000)
종합재가센터 운영	2,827,156	2,373,638	453,518	
인건비	2,386,732	2,373,638	13,093	
운영비	440,425		440,425	
주야간보호시설 운영	367,741	373,186	(35,945)	30,500
인건비	297,266	333,211	(35,945)	
운영비	70,476	39,976		30,500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21,050	21,050		
협력과 상생을 위한 민간서비스기관 지원	(8,000)			(8,000)
공공성 강화를 위한 서비스 품질관리	(9,500)			(9,500)
예비비	(2,998,030)	(2,998,030)		

3

2024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

'23. 11. 21.(화) 기획조정실장 박경원: ☎6925-3697 기획팀장 이금희: ☎2038-8673 담당 김선경: ☎6949-6312

1 혁신 계획 추진을 위한 예산 소요액

○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혁신 계획(제320회 임시회 승인)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서는 226억원의 자원 확보 필요

- 23년 총 예산 270억원 대비 44억원 감소
- 주요 감소 요인
 - 종합재가센터 개소수 축소(12→5개소)로 인한 운영비와 인건비(직책수당 등) 감소
 - 임금체계 개편으로 인한 전문서비스직 인건비 감소
 - 어린이집 6개소, 주야간보호시설 2개소 상반기 내 운영 종료
 - 본부 사용 공간 축소(2개층/322평 → 1개층/185평)

[예산소요액(23년 대비 24년 비교)]

(단위: 억원)

구분		23년	24년	증감액	비고
세입계		270	226	△ 44	
자 체 수 입 및 보조금	종합재가센터	36	27	△ 9	공공돌봄 기능 강화
	주야간보호시설	6	3	△ 3	24년 상반기 내 운영 종료
	어린이집	56	28	△ 28	
기타수입		12	2	△ 10	23년 8개 센터 임차보증금 반환
출연금		69	153	84	
잉여금		91	12	△ 79	
세출계		270	226	△ 44	
본부		43	73	30	소속기관 인원 101명(수탁시설 93%) 본부 전보
종합재가센터		132	108	△ 24	센터 수 축소, 전문서비스직 임금 체계개편
주야간보호시설		14	8	△ 6	24년 상반기 내 운영 종료
어린이집		62	30	△ 32	
기타사업		7	6	△ 1	
예비비		12	1	△ 11	

2 출연금 요구액

- 자체조달 가능한 73억원 외 153억원의 출연금 편성 필요
 - '23년 출연금 수입은 69억원이나, 잉여금 수입 91억원을 더할 경우 실질적인 서울시 지원금액은 160억원임.
 - * 23년 10월 제 37회 이사회에서 내부유보금 42억원 중 30억원 사용 승인
 - '24년 예상 잉여금 수입은 12억원에 불과하여 서울시 출연금 153억원 필요
 - * 공공돌봄 기능 강화 → 종합재가센터 자체 수입 감소 → 실질적인 서울시 지원금액 증가

3 2024년 예산편성안 (8개월)

- 24년 출연금 예산 100억원으로 편성시 8개월 운영 가능
 - 사회서비스의 특성상 예산의 대부분이 고정비인 인건비로 사용되며, 자체수입 증대 한계를 고려할 때, 출연금 예산 부족시 9~12월 인건비 지급 불가
 - 효율적인 세출 집행과 함께 혁신계획을 반드시 성공시켜 추경을 통해 9~12월 운영 재원 확보 위해 노력할 예정

[예산소요액(23년 대비 24년 비교)]

(단위: 억원)

구분	12개월	8개월	부족액	비고	
세입계	226	163	△ 63		
자체수입 및 보조금	종합재가센터	27	18	△ 9	24년 상반기 내 운영 종료
	주야간보호시설	3	3	-	
	어린이집	28	28	-	
기타수입	2	2	-		
출연금	153	100	△ 53		
잉여금	12	12	-		
세출계	226	163	63		
본부	73	47	26	소속기관 인원 101명(수탁시설 93%) 본부 전보	
종합재가센터	108	72	36	월별 소요액 균일	
주야간보호시설	8	8	-	24년 상반기 내 운영 종료	
어린이집	30	30	-		
기타사업	6	6	-	대부분 필요사업 8월 내 수행	
예비비	1	1	-		

(단위:천원)

구분	예산과목	2024년 (A)	2023년 (B)	증감(A-B)	비고
세입	총 계	16,335,915	26,971,853	△10,635,938	'24.8월까지 운영가정
	영업수입(자체)	3,222,925	6,486,603	△3,263,678	
	종합재가센터	1,829,500	3,589,660	△1,760,160	· 3대 틈새돌봄 공공기능 강화
	국공립어린이집	1,050,425	2,263,972	△1,213,547	· 7→6개소(23.10) · 6개소 24년 상반기 내 운영 종료
	주야간보호시설	343,000	632,971	△289,971	· 주야간 2개소 24년 상반기 내 운영 종료
	출연금 수입	10,000,000	4,949,124	5,050,876	· 市 출연금(자체 시비)
	보조금 수입	1,796,832	5,377,429	△3,580,597	
	국시비(서사원 운영)	-	1,935,720	-	·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및 매칭시비
	종합재가센터 및 주야간 보조금	11,080	10,600	480	· 자치구 보조금
	어린이집 보조금	1,695,752	3,296,409	△1,600,657	
	민간지원보조금	90,000	134,700	-44,700	
	이자 수입	10,000	152,053	△142,053	· 보유계좌 이자수입
	기타 수입	56,667	879,538	△822,871	· 임차보증금 반환수입 등
	잉여금	1,249,491	9,127,105	△7,877,614	· 전년도 결산 잉여금
세출	총 계	16,335,915	26,971,853	△10,635,938	'24.8월까지 운영가정
	기관운영비	4,702,535	4,305,369	397,166	
	본부인건비	2,381,351	2,071,175	310,176	· 소속기관 인원 101명(수탁시설93%) 본부 전보 가정
	본부운영비	2,321,185	2,234,194	86,991	
	정책사업비	11,533,379	21,433,664	△9,900,285	
	종합재가센터 운영	7,174,706	13,151,757	△5,977,051	· 전문서비스직 급여 '23년 대비 90%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2,999,798	6,182,498	△3,182,700	· 6개소 24년 상반기 내 운영 종료
	주야간보호시설 운영	808,533	1,436,284	△627,751	· 주야간 2개소 24년 상반기 내 운영 종료
	민간서비스 기관 지원	121,180	139,788	△18,608	·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다변화 등
	서비스품질관리	206,000	151,000	55,000	· 내부직원 교육 등
	돌봄체계 지원기반 구축	158,500	191,500	△33,000	· 홍보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긴급돌봄지원단 운영	64,663	49,364	15,299	· 아동학대 등 긴급돌봄
	성과급	-	-	-	· 23, 24년 성과급 미편성
	영업외비용	-	131,473	△131,473	· 보조금 반환금
예비비	100,000	1,232,820	△1,132,820	· 23년: 내부유보금 4,230,851 중 2,998,030사용 후 잔액 · 24년 : 최소금액 편성	